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20가단5155195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15 선고 2021나1169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20가단5155195 판결

전문

원 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목민

담당변호사 배은서

피 고 1. A

2. B

변론종결 2020. 12. 24.

판결선고 2021. 1. 28.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9,726,247원과 그중 49,726,128원에 대하여 2020. 5. 19.부터 2020. 6. 18.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2019. 4. 1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피고 A에게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9. 4. 19. 접수 제3525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가. 원고는 피고 A의 의뢰에 따라 2018. 5. 11. 보증금액 5,000만 원, 보증기한 2023. 5. 23.로 정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A은 원고가 발급해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C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피고 A이 2020. 2. 4.부터 C은행에 대한 이자 상환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C은행의 청구에 따라 2020. 5. 19. 연체된 대출원리금 50,162,09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 피고 A은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 이행금액, ② 이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③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④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⑤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⑥ 위 ③항과 ④항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재단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제10조), 2018. 2. 1. 이후 원고가 정하는 손해금율은 연 10%이고, 회수금은 435,970원,

확정손해금은 119원이다.

라. 한편 피고 A은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4. 18. 채무자 피고 A, 채권최고액 1억 1,000만 원으로 정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19.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접수 제3525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A은 적극재산으로 시가 약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에 소극재산으로 약 281,069,000원(= D은행 79,000,000원 + E카드 19,069,000원 + C은행 50,000,000원 + 피고 B에 대한 차용금 1억 3,3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법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원고와 피고 B 사이에)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한 자백간주(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위 가. 내지 라.항 사실에 대하여)

2. 피고 A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49,726,247원(= 대위변제금 잔액 49,726,128원(= 대위변제금 50,162,098원 - 회수금 435,970원) + 확정손해금 119원) 및 그중 대위변제금 잔액 49,726,128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0. 5.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20. 6. 18.까지는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A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당사자의 지위에 있었고 C은행에 대하여 신용보증의 대상인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원고의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발생되어 있었던 점, 보증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A이 이미 C은행에 대하여 신용보증의 대상이 되는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변제할 아무런 방도를 강구하지 아니한 채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음에 비추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에는 가까운 장래에 신용보증사고 및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던 점, 실제로 피고 A이 C은행에게 2020. 2. 4.부터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켜 보증인인 원고가 2020. 5. 19. C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의 존재

(1)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A이 채무초과 상태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와 같이 피고 A이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정 채권자인 피고 B에게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 일반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이에 관하여 채무자인 피고 A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가 추정된다.

다.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A에게 사업장 자금을 빌려주게 되었고 이를 갚지 못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회수 예상금액이 적어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었으므로 선의라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1252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되는 것인바(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 위 주장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선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B은 피고 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수

별지

목 록

1등 전물의 표시

경기도 의정부시 아파트 동[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5층 호 67.88㎡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경기도 의정부시 대 6617㎡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6446분의 69.46